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
[시행 2016.4.11] [조례 제4846호, 2016.4.11, 제정]

대구광역시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박물관 및 미술관”이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로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.
2. “관련법인ㆍ단체”는 「민법」ㆍ「상법」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비 지원) ① 시장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ㆍ단체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
2.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
3.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등은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칙 <제4846호,2016.4.11>

제1조(시행일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“박물관 등록 등에”를 “박물관에”로 한다.